

#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하 남 시 의 회

#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6. 6.

발 의 자 : 방 미 숙 의원(인)

## 1. 제정이유

- 하남시지역 내 생산되는 각종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고유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공예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공예품과 공예업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6. 예산수반 사항

## 7.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2016. 6. 14. ~ 6. 24.)

## 8. 부서협의 결과 : 덧붙임

## 9. 기타 참고사항

## 10. 관련부서 : 경기도

##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다.
2. “공예업체”란 하남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공예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내용)**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향상·기술개발·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지원사업
2.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체험·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